#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

2015. 7. 8 (수)



## Contents



1장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및 목적

2장 가이드라인 추진 경과

3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4장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

# 1장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및 목적

### 1. 제정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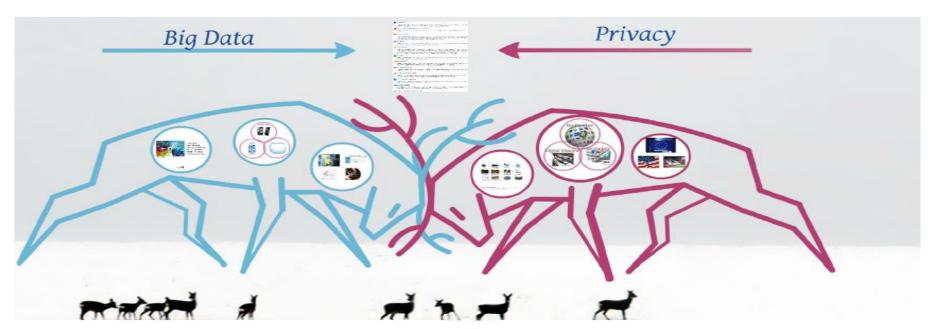
- 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최대한 활용, 맞춤형 서비스/기업 수익 연계
  - 스포츠, 금융, 통신, 의료, 카드, 부동산,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타켓 마케팅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
- 🗘 반면,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,이용되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증대
  - (우려1)美, 유통업체가 이용자의 구매이력을 분석하여 임산부용 쿠폰을 발송하여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부모보다 먼저 알아내어 마케팅에 이용
  - (우려 2) 얼굴 인식 기술이 기기와 연결되어 축적될 경우,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
  - (우려 3) 범죄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범죄자예정자로 분류





### 2. 제정 목적: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접근

- ▶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수집.이용의 투명성 확보
  - 현행 법률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은 빅데이터의 조합, 분석, 생성과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제시
  - 사전 동의획득이 곤란한 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수집 사실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



# 2장 가이드라인 추진 경과

### 1. 추진 경과

- ▲ 2013. 7~9월 : 연구반 운영 / 2013.12.13 : 초안 마련
- 2013. 12. 18 : 제1차 토론회 (미래부 · 방통위 공동 주최, 빅데이터 페어)
- 🍑 | 2014. 1. 9 : 시민단체 의견 검토 및 수정안 마련
- 2014. 3~11월: 각계 의견 수렴 (사업자, 시민단체, 학계, 법조계 등)
  - 2014. 3. 19 : 제2차 토론회 (방통위 주최·KISA 주관,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)
  - 2014. 6. 16 : 제3차 토론회 (방통위 주최·KISA 주관,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)
  - 2014. 11. 20: 제4차 토론회 (방통위 주최·KISA 주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)
- 🛕 | 2014. 11. 28 : 최종안 마련
- ▲ | 2014. 12. 23 : 제정 / 2015. 1. 1 : 시행
- 🚺 2014. 2. 27 :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

# 3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### 1. 주요 내용

- 1 정보의 수집 시부터 식별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 적용
  - ♦ 정보의 수집 시부터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하여 조합·분석
- 2 비식별화된 정보는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
  -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는 개인식별성이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
- 3 빅데이터 처리 사실·목적 등에 대한 이용자 투명성 확보
  - ♪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 사실·목적·수집 출처 및 이용자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

## 2. 주요 내용

- 4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·이용·저장·조합·분석·생성 등 처리 금지
  - 특정 개인의 사상·신념, 정치적 견해 등 민감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·이용·저장·조합·분석 등 처리 금지
  - ◇ 이메일,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·이용·저장·조합·분석 등 처리 금지
- 5 수집된 정보의 저장·관리 시 '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' 시행
-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·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'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'적용
- ♦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, 접속 기록에 대한 위·변조 방지 조치,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·운영 등 악성프로그램 예방

# 4장

## 4장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

### 1. 개선 방향: 개인정보의 정의 합리화

### 문제점

- ♦ 빅데이터 산업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정의
  -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

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

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자재적 결합가능성만 있으면 비식별정보도 개인정보라고 정의

### 개선 방향(안)

- 🍑 개인정보의 재분류, 합리화 (예시)
  -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  - ·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 등
  - 개별적으로는 비식별정보지만 함께 처리되고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  - ·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계좌정보 등이 함께 처리되고 있을때
  - 비식별정보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 입수
    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 시, 식별성을 띄는 정보
    - ·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계좌정보 등이 함께 처리되고 있을때
    - · 서비스 모델 상 사업수행 과정에서 추가 정보 입수가 예정된 경우
  - 가인정보의 필수성 등에 따른 합리적 재분류 및 보호체계 차등화

### 2. 개선 방향: 사전동의 규제의 합리화

### 문제점

- 🔷 현행 개인정보 '사전동의'규제의 특징
- 이용자 동의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까지 동의 요구
  - 정보통신망법: 제22조, 제24조의2개인정보보호법: 제17조, 제18조
- 엄격한 변경 동의 의무, 이용 목적 고지 의무 등을 요구
  - · 정보통신망법: 제22조제1항 단서
- 사전동의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
  - $^{\cdot}$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ightarrow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-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약, 빅데이터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어려움

### 개선 방향(안)

- ᠔ 과도한 사전동의 규제의 합리화
  - 서비스 제공,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,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한 사전 동의 개선
    - → 명확한 고지를 통한 예견 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
  - 엄격한 변경 동의 조항의 완화
    - → 의사표시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또는 정당한 이익(혜택)의 제공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토록 동의 의무 완화
- ♦ 사전동의형에서 사후통제형으로 전환
  - → 기업들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, 세분화된 '개인정보이용설정'기능 도입을 의무화
  - →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않는 경우에 '개인정보이용설정' 페이지에서 이를 거부



### 3. 개선 방향: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이용 근거 마련

### 문제점

- 🔷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
  - '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'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법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법적 정의는 부재
- 사업자의 법적 의무 근거 부재
  -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 시 조치의무 등의 법적 근거가 '정보통신망법'에 부재

(참고)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7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🔷 법적 의무 미이행 사업자 제재 근거 부재
  -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 시 조치 의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부재

### 개선 방향(안)

- ♦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정의 규정 마련
  - → (비식별화 조치)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하는 조치
- ♦ 사업자의 법적 의무 근거 규정 마련
  -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 시 사업자 의무 이행 사항 마련
    - → 개인정보의 수집 시 비식별화 조치하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, 이용 가능
    - → 비식별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 이행

의 비데이터 처리를 위한 '비식별화' 개념 명시화 및 불확실성 최소화